보건의료관점에서 본 국가재난안전관리 체계 및 대책

A brief review of national management system in public health and medical aspect

김지희* · 이시영**
Kim, Jee Hee · Lee, Si Young

Abstract

Recently the increase of natural disaster and man-made disaster, newly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and bioterrorism attack changed the world in many aspects. So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other related agencies are trying to solve the problems with disasters. We discussed these problems in the following eleven categories. ① emergency medicine ② communicable disease control, ③ food safety control, ④ public facilities safety, ⑤ social welfare facilities safety, ⑥ bioterrorism control, ⑦ geriatric health care, ⑧ insurance support, ⑨ overseas disaster victim support, ⑩ national organization protection, ⑪ fire fighter safety in forest fire. Through the reviews on the various kinds of disaster, we proposed the disaster control measure for the near future.

key words :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disaster prevention, public health

1. 서 론

최근 자연재난 및 인위재난의 증가와 병원 및 혈액원 등 보건의료기관의 파업, 신종전염병, 생물테러 등으로 재난의 유형이 대형화, 다양화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련 유관 기관들은 응급의료, 전염병, 식중독 및 대국민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안전관리체계를 구축 운영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대폭 감소시키고, 국민 불안감을 조기에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국가는 각종 재난을 예방, 대비하고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 복구활동을 통해 그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해야 한다. 눈부신 의학의 발전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웰빙(wellbeing)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는 생명존중과 재산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한다. 연구자들은 국가재난안전관리를 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기반체계 마비로 정의를 나누어 언급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자연재난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는 태풍, 홍수, 폭풍, 해일, 폭설, 가뭄 또는 지진(지진 해일 포함),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등을 자연재난으로 규정하고 있다(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 이와 함께 각각의 개별 법률 등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 자연재난이 있다. 인위재난의 개념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학자의 견해에 따라, 법률상 정의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학문적으로 통일되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다. 인위재난에 관한 일반적인 정의는 "원인이나 규모와 상관없이 자연재난이 아닌 인간의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된 사고로 생활환경이 불리한 방향으로 급작스럽게 변화하거나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로 기존의 질서와 기능이 상실되고,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큰 현상"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여기에는 범죄, 테러, 전쟁 등의 목적으로 발생되는 피해는 인위재난의 개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또한 인위재난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의 피해를 포함 한다. 국가기반체계 마비란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의미 한다. 본 연구는 자연

* 정회원 · 강원대학교 응급구조학과 교수 · E-mail: kjh1962@hanmail.net
** 정회원 · 강원대학교 방재기술전문대학원 교수

재난, 인위재난의 증가로 인한 응급의료, 전염병, 식중독 및 대국민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안전관리체계를 구축 운영함으로써, 생명과 재산피해를 감소시키고, 국민 불안감을 조기에 해소하고자 하는 관련 부처의 업무 집행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보건의료관점에서 본 재난안전관리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범위

연구자들은 자연재난, 인적재난, 국가기반체계 미비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11개의 유형별 대책으로 나누어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유형은 ① 응급의료, ② 전염병 관리, ③ 식품안전관리, ④ 공공시설 안전관리, ⑤ 사회복지시설안전관리, ⑥ 생물테러전염병 관리, ⑦ 노인건강관리, ⑧ 보험료 지원, ⑨ 해외재난 사상자 지원, ⑩ 국가기반체계 보호대책, ⑪ 산불진화대원의 안전관리 등 11개의 유형별 대책을 논하기 이전에 위기관리의 단계에 대한 기존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3. 결 론

2003년 2월말 중국・홍콩 등에서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SARS)이라는 신종전염병이 발생하여 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확산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2003년 4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SARS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범정부적 차원의 종합적 대응,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신속・정확한 의사소통에 따른 조치, 대한의사협회・관련분야 전문가 등 유관단체의 협조,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와 국민의 참여로 SARS 안전국가실현 및 세계보건기구로부터 SARS 방역 성공국가로 평가를 받았다(보건복지부, 2006). 2003년 12월 이후 베트남, 태국, 일본 등 아시아 지역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13개국에서 3,265건 발생하였으며, 우리나라는 2003년 12월 충북 음성군을 시작으로 2004년 12월까지 11개 시・군 20개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으나, 정부는 조류인플루엔자 대유행과 인체감염에 대비하여 「중앙인플루엔자대책추진단」을 설치 운영하여 조기감시체계 정비 및 입국자추적관리체계구축, 현장 대응인력의 사전 교육・훈련, 실험실 진단기능 확충과 진단시약 및 항바이러스 제제 비축, 대국민 홍보강화와 대외기관과의 공조체계 강화 등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 및 인체감염에 대비한 대응책을 마련하였다. 그 결과 인체감염사례가 1건도 발생하지 않아 조류인플루엔자 대유행으로 인한 재앙을 막을 수 있었다.

2005년 3월 31일 보건복지부는 「신종전염병 위기관리 훈련」을 실시한 바 있는데, 동 훈련은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시행(2004년 6월 1일) 이후 실시되는 정부 최초의 재난대비 모의훈련으로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행정자치부 등 14개 중앙행정부처와 16개 시・도 및 보건소, 세계보건기구 등에서 약 150 여명이 참가하였으며, 동 훈련을 통하여 관계자들의 현장대응 능력을 대폭 개선하고, 부족한 의료자원 배분의 우선순위 결정 등 관련 정책과 위기관리 매뉴얼 개발에 중요한 자료를 확보하였으며 신종전염병에 대한 위기의식의 공감대를 넓히는데 기여하였다.

2004년 12월 26일 인도 등 동남아시아 쓰나미 발생시 최초의 국제의료 지원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립의료원,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 서울대학교병원 및 대한간호사협회 등 다기관이 연합한 의료지원단(15명)과 의약품(95종 11억4천5백만원), 의료용품(97종 1억7백만원) 및 생활장비(3종 1백만원) 등을 지원하였다.

보건복지부의 재난관리 조직체계는 비상계획관실이 중심이 되어 재난에 대응을 하고 있으나, 2005년 12월 현재까지 재난전문가가 없으며 재난 담당 1인이 자연재난, 인위재난뿐만 아니라 국가기반체계보호와 위기관리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부처와의 협조체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1. 보건복지부(2006). “2006년도 재난안전관리집행계획”.